

4.5.13 학교버스운영세칙

제정 2013. 08. 0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초당대학교 차량관리규정 제11조(학교버스 운영)에 따른 학교버스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

제2조(운영) ① 학교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버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생복지처장, 학생복지과장, 교무과장, 기획연구과장, 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간사는 학생복지처 직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버스 운영
2. 시외통학버스비 책정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운 행

제5조(계약) 임차 버스의 계약은 학생복지처의 요청으로 사무처에서 계약하여 개강 1주일 이전에 학생복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 ① 학교버스는 본 대학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대학 교육에 관련되는 행사 또는 학생복지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를 위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운행시간표는 학교수업 시종 시간에 맞추어 학생복지처에서 정하고, 학생복지처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③ 원거리 학생의 통학을 위하여 버스를 배차할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재정) ① 학교버스 운영비는 학교예산지원비와 시외통학버스비로 충당한다.

② 간사는 회계연도말에 학교버스 운영 결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장 운전원의 관리

제8조(운전원의 감독) 운전원은 학생복지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9조(운전원의 의무) 운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운행에 책임을 진다.
2. 용모 및 복장을 단정히 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3. 차량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4. 운행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